

춘천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송재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19. 12. 11.

판결 선고 2020. 1. 15.

제 1 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150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D 임야 16,264㎡에 관하여,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3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2014. 6. 11. 접수 제11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E 종중 소유로서 위 종중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피고B이 제사를 봉행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 B은 원고에 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고 C에 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1.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신흥호, 판사 지예현, 판사 고철만